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33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김남근 · 민병덕 · 전현희
채현일 · 김남희 · 진성준
이훈기 · 김문수 · 박정현
송재봉 · 박홍배 · 김 윤
이해식 · 이주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취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부재 등으로 불법 수익 환수와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며, 위반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도피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액 과징금 체납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

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액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납기 전 징수 및 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제33조제4항 각 호 및 제38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3조의3제1항 신설).
- 나. 가목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가목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53조의3제2항 신설).
- 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3억원 이하)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안 제33조의2제2항).

- 라. 2년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2배로 강화(안 제33조의2제6항 신설).
- 마.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징금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징금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 사. 부과할 과징금이 2억원 이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5제1항 신설).
- 아. 사목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예상액을 한도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보전압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5제1항, 제2항 신설 등).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3억원 이하의”를 “그 위반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항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제4항의 경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징금의 합계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 과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대상과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출국금지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체납 과징금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 및 압류)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과할 과징금이 2억원 이상으로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확정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징금의 한도 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제53조의2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33조의3(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제4항의 경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징금의 합계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 과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대상과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신설></u></p>	<p><u>제33조의4(출국금지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p>

현행	개정안
	<p>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체납 과징금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 및</p>
<신설>	

현 행	개 정 안
<p><u>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u>물품등의 판매업자</u></p> <p>3. (생략)</p> <p>4. <u>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u></p> <p><u><신 설></u></p>	<p>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제53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u></p> <p>1. <u>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u></p> <p>2. <u>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u></p> <p><u>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u></p>

현행	개정안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u>